

『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3월 2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4월 5일

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발병율이 높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병원위탁운영자(학교법인구미교육재단)로부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 병원 건립부지 및 건립비(일부)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병원을 신축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【 사업개요 】

- 사 업 명 :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
- 사업위치 :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 외 6필지
- 사업규모 : 건립부지17,598m² 연건평 4,988m²
- 신축예산 : 6,577백만원(국비 2,336 도비 1,168 시비 2,073 운영자부담금 1,000)

【 취득재산 : 신축 및 기부채납 】

□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

- 토 지 : 7필지 17,598m²
- 건 물 : 4,988m²(연면적)
- 취득가액 : 6,916,586천원

□ 기부채납 : 사업부지 전부 및 사업비 일부 기부

- 토 지 : 7필지 17,598m²
- 기부채납 가액 : 1,339,586천원
 - 토 지 : 339,586(공시지가 기준)
 - 현 금 : 1,000,000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본 변경안은

-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율이 높아 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병원위탁운영자로부터
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건물 1건 및 기부채납 2건 입니다.

○ 주요내용은

-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 일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건물 4,988㎡를 취득하고
- 병원위탁운영자인 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으로부터 운영위탁 조건에 따른 사업부지 전부인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의 6필지 17,598㎡와 건립비 10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